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2024. 4. 18.)]

# 자율규제 유형 및 사례와 메타버스 자율규제에의 함의

\* 이 발표자료는 아래 연구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의 현황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선지원,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2022. 11.

선지원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 ■ 규제의 속성과 국가의 존재 이유

- "사회계약론" : 국가의 성립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약속과 동일시
- 사회계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자유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규제라는 수단을 사용
- 규제는 무조건적인 국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더 크고 궁극적인 자유를 위한 것이어야 함
- 공권력의 담지자는 그 측면에서 규제받는 당사자들이 받는 제약은 최소화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자유는 극대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고민하여 규제의 방식을 결정해야 함
-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을 찾는 것이 규제론의 가장 큰 의제

### ■ 규제의 방법론으로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

- 자율규제 : 일정한 영역에서 조직화된 집단이 스스로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
-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

- "자율규제를 위한 준칙 내지 기준이 ... 민간 부문의 행위주체들을 포함한 의사 구성체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는 점과 "피규제자 스스로 정립한 자율기준을 적용하고 이행"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또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자정노력으로서의 규제활동"
- "사적 그룹이나 이익단체 등에 의한 규제" "경제 경영자, 사회적 파트너, 비정부 기구 또는 협의회에게 그들 스스로 통상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채택할 가능성을 주는 것(특히 실행 규칙 또는 분야별 합의)"

### ■ 규제의 방법론으로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

- 근대 초기의 형식적 법치주의 행정 단계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통해 정한 내용을 관료가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전형적인 모습
-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대의 행정에서 전통적인 top-down 방식의 규제는 여러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여러 방법을 통해 규제의 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음
-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음
- 개방성과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기반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시장의 새로운 모습에 적합한 규제 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자율규제가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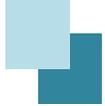
## 구별 개념 내지 확장 개념

### ■ 전통적인 규제(top-down 방식 규제)

- 입법자가 규제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면, 행정주체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
- 국가에 의한 규제로서 법규를 통해 강제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위반 시 일정한 처벌(행정벌 혹은 형사벌)까지 가능한 경우를 통칭
-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일정한 요건을 공적 주체가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공권력을 통해 그 법적 효과를 강제로 일으키는 방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

- top-down 방식의 규제는 법적 규칙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통일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법률을 통해, 혹은 법률의 수권을 받은 법규명령 등을 통해 근거지어지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
- 시장 상황의 변화가 매우 빈번한 영역 또는 규제 입안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영역에서 법적 규칙을 통해 정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될 가능성
- 정해진 규칙만을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규제의 본래 목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



## 구별 개념 내지 확장 개념

### ■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개혁

- 규제 개혁 혹은 규제의 완화를 통해 공권력이 직접 행위에 대해 제약하는 형태의 규제가 시장 행위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도 있음
- 즉,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결과로 top-down 방식의 규제가 자율규제로 변경될 수 있음
- 두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하여, 시장에서 아예 규제가 사라지는 현상과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로 변화되는 현상 역시 구분해야 함

### ■ 원칙 중심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나 제재 여부를 규칙을 통해 확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범위 안에서 유연한 행위 규제를 하는 방식
- 규제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top-down 방식의 규제가 목적 달성의 수단까지도 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만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규제의 목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하여, 원칙 중심의 규제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다변화된 수단을 사용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규제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구별 개념 내지 확장 개념

### ▪ 공동 규제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

- 공동규제(Co-Regulation)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는 규제의 단계별로 공적 주체와 시장 행위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의 메커니즘
- 공적주체가 추상적인 규율을 설정하고, 시장 행위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되, 시장 행위자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행위자와 공동으로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를 설정하며,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지속적인 기능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
- 핵심 요소 ⇒ 규범의 설정과 집행 사이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의사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 ▪ 자율규제의 개념 확장

- 모든 형태의 자율규제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국가 혹은 공동체가 제시한 규범의 틀(Framework) 안에서 이루어짐
-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통제가 필요하며, 실제로 상위의 차원에서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 주체가 추상적인 원칙만을 제시한 채, 세부적인 기준과 집행의 방법을 시장 행위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공적 주체가 더 세부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고, 시장 행위자는 집행의 방법만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

## 자율규제 적용의 고려

### ■ 자율규제 적용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는 분야

- 추상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는 분야
-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기술 발전이 중요한 분야
- 시장 행위자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규제 입안자 및 집행자의 것보다 월등한 분야
- 자율성 보장을 통해 수호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 시장의 민감도가 큰 영역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 규범적 체계에 따른 분류 (Black, 1996, p. 26 이하)

위임된(mandated)  
자율규제

- ✓ 공적 주체가 설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장 행위자가 세부 규범을 수립하거나 집행을 분담

승인적(sanctioned)  
자율규제

- ✓ 공적 주체의 승인에 기초하여 시장 행위자 스스로 규제 체계를 구축

강제된(coerced) 자  
율규제

- ✓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하향식의 규제가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 행위자들의 집단이 규제 형성 및 집행

자발적(voluntary)  
자율규제

- ✓ 공적 주체의 개입 및 관여 없이 시장 행위자들이 자생적으로 규제 체계 형성

**조직형태별 분류**

**위원회  
(내부 감시기구)형**

- ✓ 피규제자 조직 내부에 경영자와 독립한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협의체형**

- ✓ 일정 시장의 피규제자들을 비롯한 일단의 주체들이 규제의 기준과 실행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 시장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자율규제의 조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협의체와 별개로 자율규제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형식도 존재(KISO/GSOK)
  - 시장행위자들과의 협의체에 공공 부문이 동참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실현방식별 분류

##### 자치규범형

- ✓ 시장에서의 행위 주체 혹은 행위 주체의 집단이 자치규범 형태의 자율규범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형식

\* 자율규범 내에 규칙 미준수에 대한 일정한 벌칙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자율인증형

- ✓ 일정한 기준의 충족이나 규율 이행 여부 자체는 시장 행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이를 확인하여 공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적 규제를 면제하는 방법

※ 위와 같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복수의 실현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유형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

#### 규제대상별 분류

플랫폼과 관계를 맺는  
행위자(이용자, 사업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 ✓ 콘텐츠, 알고리즘·데이터의 사용, 광고\*

\* 경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임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 ✓ 경쟁제한행위, 이용자 및 사업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침해 행위, 사업상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분쟁 관리

**Meta의 Oversight Board\* – 강제된 자율규제 / 자발적 자율규제**  Oversight Board

- **Facebook은 커뮤니티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표현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Oversight Board 설치(2018년11월)**
  - 위원회는 페이스북 내에서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며, 독립적으로 판단
  - 페이스북은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
- **위원회 설립 목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콘텐츠에 대해 원칙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페이스북 기업 콘텐츠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는 것임**
  - 사례들을 선별 검토하여 페이스북이 제시한 가치와 정책에 따라 페이스북의 콘텐츠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검토함

\*Oversight Board | Independent Judgment, Transparency, Legitimacy. <<https://oversightboard.com>> (2024. 3. 20. 최종 접속)

**Meta의 Oversight Board\* - 강제된 자율규제 / 자발적 자율규제**  Oversight Board

▪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

- 전문지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 선정
- 독립 신탁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상의 독립성을 도모함
- 의사결정과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이사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도모

▪ **위원회의 권한**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상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삭제 여부에 대해 판단하며,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됨
  - \*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의 제기 → 위원회의 안건 채택 → 각 사례별 패널 선정 → 사안에 대한 토론 → 결정 → 페이스북의 결정 수용 및 조치
- 회사의 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해 권고

## 배달의 민족의 리뷰관리정책 - 자발적 자율규제

### 리뷰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 가맹사업자 및 최종소비자 사이의 분란을 예방하고, 플랫폼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뷰 관리 정책 채택
- 불법콘텐츠에 해당하는 리뷰를 제외하고는, 법적 관리의 무가 없는 사항이지만, 플랫폼 운영상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채택

### 리뷰 유형에 따른 처리

- 불법리뷰(망법상 불법정보) : 자동차단 및 삭제
- 허위리뷰(경우에 따라 영업방해행위가 될 수 있음) : 실시간 탐지 및 차단
- 분쟁리뷰(가맹점이나 이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 임시 조치 후 당사자 간 분쟁 해결
- 악성리뷰 : 이용자별 평균 별점과 리뷰 작성이력을 앱 내에 노출

### 리뷰 삭제 기준에 대한 규범 채택? 계약에의 편입?



#### 정책 주요 가치 및 원칙

신뢰	진실성, 정확성, 투명성
권익보호	준법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보안
개방	접근성, 비차별성, 반응성

#### 건강한 리뷰 서비스를 위한 배민의 노력

리뷰 통계 도입	음식과 가게를 판단할 때 리뷰 작성자의 별점 부여 성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남긴 별점 평균 제공
추천순 리뷰 정렬 추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음식 메뉴와 가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리뷰 순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와 업주에게 도움
리뷰 신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유저 신고 정보 기반 필터링 시스템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리뷰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
배달 평가와 음식점 리뷰 분리	소비자가 배달과 음식점의 리뷰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용 후기의 정확성 제고

#### 위원회형 방식의 평가 및 시사점

- 이러한 방식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현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실행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 관리 기준을 비롯한 관련 내용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체계의 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
- 내부 감시위원회의 실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시 중요
- 이와 같은 사항들은 기업 활동에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시킬 수 있음

### 영국의 인터넷감시기구(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 자발적 자율규제



- 설립 목적 및 연혁 :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 특히, 아동에게 — 안전한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
- 구성원 :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의 출자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

#### [IWF 주요 회원사(8만 파운드 이상 출자사)]

Amazon MEMBER SINCE 01/12/1996 <a href="#">Visit website</a>	Apple MEMBER SINCE 01/12/1996 <a href="#">Visit website</a>	Aspiegel MEMBER SINCE 01/04/2000 <a href="#">Visit website</a>	BT MEMBER SINCE 01/04/1997 <a href="#">Find out more</a>	Sky PLC MEMBER SINCE 01/04/2000 <a href="#">Visit website</a>	TalkTalk MEMBER SINCE 01/04/2004 <a href="#">Visit website</a>	Telefónica SA MEMBER SINCE 01/04/2002 <a href="#">Find out more</a>	TikTok MEMBER SINCE 01/09/2019 <a href="#">Find out more</a>
Cisco Systems Inc MEMBER SINCE 01/10/2008 <a href="#">Visit website</a>	Globe Telecom MEMBER SINCE 01/08/2001 <a href="#">Visit website</a>	Google MEMBER SINCE 01/05/2004 <a href="#">Find out more</a>	Mastercard MEMBER SINCE 01/01/2011 <a href="#">Visit website</a>	Verisign MEMBER SINCE 01/03/2000 <a href="#">Find out more</a>	Virgin Media MEMBER SINCE 01/04/1998 <a href="#">Find out more</a>	Vodafone Group MEMBER SINCE 01/04/2001 <a href="#">Find out more</a>	
Meta MEMBER SINCE 01/12/2009 <a href="#">Find out more</a>	Microsoft MEMBER SINCE 01/01/2001 <a href="#">Find out more</a>	MTN MEMBER SINCE 01/10/2019 <a href="#">Find out more</a>	PLDT MEMBER SINCE 01/01/2011 <a href="#">Visit website</a>				

### 영국의 인터넷감시기구(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 자발적 자율규제



#### ■ 주요 기능

- Tech-for-good :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 구축
- 전세계 테크기업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 콘텐츠 평가 결과,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해 아동 성적 학대를 포함한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한 노력
- 핫라인의 운영 : 이용자 스스로가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

※ 2022년 현재 영국에서의 아동 성적 학대물 호스팅은 1996년 18%에서 1% 미만으로 대폭 감소

- **정부 규제와의 관계 : 정부의 승인이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실상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WF의 연구 내용 혹은 권고에 대해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하는 형태

### 멀티미디어자율통제기구(FSM) - 승인적 자율규제



#### ▪ 2005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의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로 승인

\*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에 근거하여 주 미디어청들을 대표하는 공적 기구로서 방송 및 텔레미디어에서의 내용 통제를 관장

- 주간협약이 제시하는 규범의 틀 안에서 자율적인 집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된 자율규제" 유형의 거버넌스로 평가할 수 있음(기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를 표방함을 선언)

※ 2018년 이후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집행 의무 강화

#### ▪ 주요 기능

- 핫라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불법·유해정보 처리
- 세 가지 분야의 행동규약(Kodex) 제정 - 이동통신, 검색엔진, 텔레텍스트(데이터방송)
-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미디어 교육
- 미디어 관련 연구 기능 수행

#### ▪ 실효성 확보 수단

- 자율규제에 참여할 경우 주간협약이 부여하는 사업자의 의무(예컨대 청소년보호위원 지정) 면제
-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일단 배제되고, 일차적으로 FSM의 통제를 받게 되어, 국가에 의한 처벌이라는 리스크 완화
- 회원사의 위반 행위(청소년유해정보 유통)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징계 또는 벌금 및 제명과 같은 자체 징계 부여

### 방송자율통제기구(FSF\*) - 자발적 자율규제

- 조직 : 연방 전체의 전국 단위 민영방송사업자로 구성, 산하에 학계, 미디어, 교육 및 청소년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관리위원회(Kuratorium)를 두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 주요 기능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목적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폭력성, 선정성 및 비민주적인 가치 전파 콘텐츠)\*, 청소년보호 핫라인 운영, 미디어 교육 및 방송 관련 연구 기능
  - 공적인 성격이 없는 완전 자율기구
  - \*심사 척도 :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이 정하는 기준

### 독일의 언론평의회(Deutsches Presserat)\* - 위임된 자율규제



- 성격과 목적 : 독일 내 종이매체 및 온라인 미디어 매체의 자율 통제기구로서, 저널리즘 윤리 기준(Pressekodex)을 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언론의 준수 여부를 판정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표방함
- 법적 근거 : 1976년부터 시행된 「독일 언론평의회 소속 이의신청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Gesetz zur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s vom Deutschen Presserat eingesetzten Beschwerdeausschusses)

### [저널리즘 윤리 기준의 내용]

- 언론사 업무 시의 지침을 총 16개 조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제출하는 불만 사항에 대한 평가 기준의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전문 : 언론 자유를 표방하며, 본 기준이 독일에서의 언론사의 직업 윤리를 구체화하여 각종 의무와 독자의 권리를 규정한다는 점을 밝힘
- 제1조 : 인권의 보장과 준수
- 제2조 : 설문조사, 사진 사용, 사전 통지, 인터뷰, 그림 표현, 독자 투고 및 이용자 창출 콘텐츠에 있어서의 정확성
- 제3조 : 오보의 정정
- 제4조 : 취재의 한계
- 제5조 : 비밀의 준수

- 제6조 : 언론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제7조 : 광고와 편집의 분리
- 제8조 : 인격의 보호
- 제9조 : 존엄성의 보호
- 제10조 : 종교, 이념 및 도덕적 신념의 존중
- 제11조 : 폭력, 잔인성 및 고통에 대한 세심한 배려, 청소년 보호
- 제12조 : 성별, 장애 여부, 인종, 종교, 사회적 소속 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의 금지
- 제13조 :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의 편견 금지,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 제14조 : 비판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 독일의 언론평의회(Deutsches Presserat) - 위임된 자율규제



- **조직 구성 : 등록된 협회들이 평의회의 조직을 구성**
  - 소속 협회 : 연방 디지털출판 및 신문발행자 협회(Bundesverband Digitalpublisher und Zeitungsverleger : BDZV), 독일 언론인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DJV), 독일 언론인연합(Deutsche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 : dju), 자유 언론 미디어 협회(Medienverband der freien Presse : MVFP)
  - 위 협회들이 각 2인의 위원을 파견하여 집행위원회를 이루며, 집행위원회는 재정, 인사 및 조직상의 업무를 관장함
  - 내용상의 윤리 문제에 대한 토론은 네 개 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Plenum)가 담당
  - 회원협회들의 출자금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 자원 조달
- **이의신청위원회(Beschwerdeausschüsse)의 운영 :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전체위원회가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가 평가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자발적 자율규제



- 조직 구성 :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

### About KISO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로(온라인콘텐츠, 부동산광고 등) 법규범에 대한 자율 준수를 위한 위원회 운영 - 회원사들의 규제 준수에 대한 검증 방식
-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기능

### 미디어 분야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통상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 내지 불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존재 (정보통신망법)하며, 미디어 분야의 자율규제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 기능을 담당
- 공적인 법집행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필요
- 예컨대 FSM의 운영의 배경에는 규범의 틀 내에서의 자율적인 집행이라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 미디어 당국의 합의)가 존재했음
- 이러한 형태의 자율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기구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시행의 과정에서도 자율규제 체제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피드백이 필요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연합(DAA)\* - 자발적 자율규제



- **성격 및 목적** : 광고 및 마케팅 업계 단체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집행
  - 관련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FTC와 업무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회원사** : AAF(The American Advertising Federation), ANA(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BBB(Better Business Bureau), DMA(Data&Marketing Association),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등의 단체들이 DAA를 구성

※ 유럽에서는 2012년 EDAA 설립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연합(DAA) - 자발적 자율규제



- **DAA는 디지털 광고에 대해 업계가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투명성 제고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종 자율규제 원칙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함**
  -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DAA 원칙 적용(Application of the DAA Principles of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to Political Advertising) : 연방 혹은 특정 주 선거에서의 정치 광고에 자율규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설명
  - 투명성 및 데이터 이용 교차 디바이스에 대한 DAA 원칙 적용(Application of the DAA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Control to Data Used Across Devices) : 특정 브라우저나 장치에서 수집된 멀티 사이트 데이터 및 교차 앱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DAA 자율규제 원칙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모바일 환경에서의 자율규제 원칙 적용(Application of Self-Regulatory Principles to the Mobile Environment) : 자율규제 원칙 전반을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멀티 사이트 데이터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Multi-Site Data) : 멀티 사이트 데이터의 수집 제한, 민감 정보의 이용 제한 및 책임성 등을 포함한 멀티사이트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
  - 온라인 행태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원칙(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 교육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소비자 통제의 원칙, 데이터 보안의 원칙, 변경사항 적용 시 동의 원칙, 민감데이터 관련 원칙, 책임성의 원칙 등을 요구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연합(DAA) - 자발적 자율규제



#### ▪ (거버넌스) 협력 체계의 이용

- 산업 분야 자율규제 실행단체인 "BBB National Programs(BBBNP)" 및 "전국광고자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 ANA)"가 DAA의 자율규제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협업 수행
- BBBNP와 ANA는 공동으로 이용자 불만 해결 관리와 준법 모니터링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이용자(시청자)는 양 기관에 행태광고에 있어서의 불만 사항을 통지하고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음
- 양 기관은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광고자가 DAA에 원칙을 준수했는지 발표함

#### ▪ (실효성 확보 수단)AdChoice를 통한 자율인증

- DAA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인터넷 광고에 파란색 삼각형 모양인 AdChoices 아이콘을 표출시켜 이를 표시
- 이용자가 웹사이트상의 AdChoices 아이콘을 클릭하면 광고를 게재한 회사, 광고가 게재된 이유, 선택 해제(옵트아웃)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관한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여부를 등을 확인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 평가 및 시사점

- DAA 모델의 경우 단일한 목적(광고 콘텐츠의 건전성 유지)을 위한 자율규제 체제로서는 적합하나,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즉, 자율규제 모델의 선택을 위해서는 규제 목적과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할 필요

### 미국 오락용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 자발적 자율규제



#### ■ 목적

-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게임 자율 규제 기구
- ESRB는 컴퓨터나 비디오게임 안의 콘테츠에 대한 간결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서 특히 부모들이 게임을 구매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

#### ■ 설립 근거

- 1994년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ESA)에 의해 설립
- 상호작용적 오락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컴퓨터게임과 비디오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함
- 초기 설립배경은 시민단체와 게임산업체와의 불화 때문이었으며, 게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지적이 많아지자 업체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기구를 설립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음

### 미국 오락용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 자발적 자율규제



#### ▪ 조직 및 주요 역할목적

- 3종류의 자율규약을 공개하며 이 규약들은 등급 분류와 관련한 ESRB의 집행력의 근거가 됨

자율 규약	관리 조직	주요 역할
「ESRB Retail Council “Ratings Education and Enforcement Code”」	ESRB 소매협의회 (ERC)	- 아마존, 월마트 등이 회원사가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임에 ESRB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에 따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 ERC는 관리·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운영
「ESRB Website Council “Code of Conduct”」	ESRB 웹사이트협의회 (EWB)	- 게임관련언론, 게임전시회사, 게임전문웹페이지 등이 게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등급표시나 설명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 회원사들은 각자의 웹사이트에서 17세 미만의 방문자의 연결을 제한하는 등의 합동 자율규제를 통해 ESRB 등급 심의를 준수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SPONSIBLE ADVERTISING PRACTICES」	ESRB 광고심사위원회 (ARC)	- ESRB 등급이 매겨진 게임의 광고에 대해 지침을 구현하고 이를 집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 - 해당 등급에 따른 광고 심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금전적 벌금이 부과

### 미국 오락용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 자발적 자율규제



#### ■ 권한

-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ESRB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게임 제작사가 등급분류 규정을 어기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벌점이나 벌금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등급분류가 끝난 게임에 대해 등급 설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음
- ESRB는 소매업체 차원에서 등급분류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않으나, 등급정보를 표기하고 미성년자에게 특정 제품을 판매 혹은 대여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매업체 및 게임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많은 수의 소매업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인전용"등급의 제품을 판매 혹은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하는 ESRB의 "부모동의 확보 프로그램(Commitment to Parents program)"에 참여 하고 있음

### 일본 컴퓨터 오락물 등급기구(CERO) - 자발적 자율규제



#### ■ 목적

- 일반 시민이 게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윤리수준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심사 대상은 가정용 게임

#### ■ 설립 근거

- 일본 컴퓨터 게임회사들의 협회인 CESA(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등급분류에 대한 정부나 시민단체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2002년 6월 특정비영리법인인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를 출범시킴
- CESA는 자율규약(「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ソフトウェア倫理規定(컴퓨터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윤리규정)」)에서 기본이념, 차별적표현 및 명예훼손적 표현, 교육에 관련된 표현, 성적 표현, 반사회적 표현, 폭력 및 범죄에 관한 표현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구체적인 실시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CERO 倫理規定(윤리규정)」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면서 “CERO 윤리규정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함을 명시
- 한편 CESA는 18세 이상 등급 게임의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18才以上のみ対象' 家庭用ゲームソフトの広告等ガイドライン(18세 이상만 대상'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 광고 등 가이드라인)」이라는 별도의 자율규약을 만들어 운영

### 일본 컴퓨터 오락물 등급기구(CERO) - 자발적 자율규제



#### ■ 이용자 참여

-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게임기업과 관련이 있으면 안됨
- 게임을 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 주부, 학생, 5-60대 연령대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선호됨
- 일반 소비자들도 일정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심사는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며, 게임 하나 당 1-2시간이 소요되는데, 게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심사위원단이 게임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 자료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진행

### 게임 분야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 등급 분류는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자생적으로 성장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플랫폼 스스로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 것으로 보임
- 이용자 참여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성 보장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프랑스의 **舊 인터넷권리포럼(FDI)** - 승인적 자율규제



- **성격** : 기업, 각종 협회, 학자, 언론인 및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자율 규제 기구
- **설립 배경**
  - 인터넷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취지에 가장 걸맞는 개념인 "포럼" 형태 채택
  - 민간 행위자의 자율규제 및 다양한 공적 주체의 규제를 서로 공존시키기 위한 인터넷상의 협력적 규제의 개념으로 설립
- **주요 기능**
  - 인터넷 행위자들에 대한 권고안 발표 : 네트워크와 관련한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용자, 기업 및 공적 주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한편, e-commerce, 보건 및 아동 보호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 정보 제공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제와 실무에 대한 정보 및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네트워크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조직하고, 공론 형성 기능 수행
  - 인터넷 관련 분쟁 조정 :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연결 장애 등) 및 공공질서상의 문제(아동 음란물, 광고 관련 분쟁)를 제외한 기업과 이용자 혹은 개별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조정 기능 수행
  - 국제 협력 : 국제 기구 및 타국 유사 기구들과의 협업 수행, 인터넷상의 국제적인 거버넌스 형성

### 프랑스의 **舊 인터넷권리포럼(FDI)** - 승인적 자율규제



- **실효성 확보 수단**
  - 포럼이 결의한 내용(권고안)을 각 정부 기관들이 수용하여 집행
  - 인터넷 관련 쟁점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발간
- **2010년 12월 7일자로 프랑스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해체**
- **FDI의 역할은 2011년 4월 이후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CNNum)가 수행**
  - 다수의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 기구
  -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공공 정책의 개발, 수행 및 평가를 위한 자문 기능
  - FDI의 창립 초기에 표방했던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공존이라는 취지는 거의 퇴색된 것으로 보임
- **평가 및 시사점**
  -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위한 보조 기능 내지 의견 제시 기능에 역할이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체적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음
  -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규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공정거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콘텐츠 문제 등) 거버넌스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해당 모델을 도입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플랫폼 시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이한 서비스 영역과 방식을 갖고 있는 플랫폼기업들 상호 간 또는 플랫폼 기업들과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승인적 자율규제

#### ■ 법률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 업종별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분야별 자율규약 수립 및 이행

#### ■ 개인정보보호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특색

-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율 검증 체계 - 자율점검표 등의 제공
- 종국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 하에 놓여 있음
-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공존?

#### ■ 평가 및 시사점

- 경제 및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쟁점을 다루기에는 적합해 보임(서비스 환경 다양화로 일괄 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극복)
- 플랫폼 서비스 영역의 경우 가맹사업자에 대한 관리 효율화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
- 자율규약 합의 및 준수의 실효성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필요

###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시도

- 2016년의 “온라인 플랫폼 통신문”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협업경제의 경우 전통적인 하향식 규제절차보다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
  - 집행위원회는 ‘법적 요건의 적용과 적절한 감시 메커니즘의 확보를 위한 업계 내의 수단 등과 같이, 원칙에 기초한 자율규제/공동규제 방식은 플랫폼 규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기술
  - **자율규제의 시도와 좌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율규제란 ‘경제행위자, 사회적 동반자, 비정부기구 혹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럽 전역 차원의 공통된 지침(특히 업무규칙 혹은 분야별 협약)을 채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 시장에서의 평가 메커니즘(동료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자율규제에 대한 우려 : 1) 편견과 조작에도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 2) 외부의 통제가 없는 자율규제는 실패하기 쉽다는 두려움, 3) 통일된 규제상 기준이 없어 개별 사건마다 적용되는 원칙에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걱정, 4) 정부권한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
- 결국 집행위원회는 공동규제를 대안으로 제시

###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시도

#### ■ 공동규제의 시도

- 공동규제는 '유럽연합이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입법자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당 영역의 당사자(경제행위자, 사회적 동반자, 비정부기구 혹은 조직 등)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메카니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들고 있는 방식[COM (2016) 356 final]
- 집행위원회는 공동규제가 지속적인 평가와 보고를 통하여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호 학습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
- 집행위원회는 실제로 이미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혁신적 규제접근법을 시험삼아 가동해 보고, 복잡성과 가변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적 해법에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촉구

※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사이에서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공 정책의 목표를 보호하면서도 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동규제의 목적

※ 정책, 법, 규범의 개발, 감시 및 규제의 표현 집행 및 진화에 있어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결정권자들의 이익을 인정하는 뉴거버넌스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Finck, 2018)

※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규제된 자율규제"라고 표현(Hoffmann-Riem, Verwaltungsrechtsreform – Ansätze am Beispiel des Umweltschutzes, 1993)

- 전통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의 중간 단계로서,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에 공적 주체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형식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음(조대근, 2018)

※ 법적 근거와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규제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에 집행을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요소 역시 지니고 있음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공동규제 실행 사례

- Airbnb와 Amsterdam市는 양해각서(MOU) 및 조세협약(Tax Settlement)을 통해 공유숙박의 장점을 인정하는 한편 시의 조례가 정한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공유숙박업을 영위토록 하는 공동규제를 시행

※ Amsterdam市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유형에 휴가 용도("Private holiday letting")를 인정함으로써 공유 숙박을 인정함

※ Airbnb와 Amsterdam市의 공동규제 내용(안희자, 2017)

내용	Amsterdam市의 제한 내용	Airbnb 측의 집행을 위한 실천
공유숙박 허용 범위	- 연간 최대 60일, 최대 4인까지 숙박	- 자동 제한 시스템 및 날짜 계산기를 도입
조세의 납부	- 호스트의 소득세 납부 의무 - 이용자의 관광세 납부 의무	- Airbnb의 관광세 대납
안전	- 소방법/정보보호법 등의 기준 준수	- 호스트에 대해 안전규칙 고지
주민 불편 해소	- 이웃에게 공유 숙박 운영 사실 고지 의무	- 공유숙박 관련 정보의 공개(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 내역 등)
집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 공유 숙박 운영과 관련한 신고 채널 운영	- Airbnb의 사이트에 호스트가 준수해야 할 Amsterdam市의 규제 내용 게시 및 이메일 고지 - 불법 영업을 하는 호스트 퇴출

※ Airbnb는 London, Lissabon 및 Paris 등의 다른 유럽 도시들과도 비슷한 유형의 공동체 협정을 채택하여, 공동 규제를 실행함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공동규제 실행 사례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의 적합성
    - 관련 행위들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규제 집행에 협조함으로써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Finck, 2018)
    - 공적 주체의 규제 실행 비용 저감(Finck, 2018)
    - 집행의 용이성 : 규제의 실행에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 적용 가능
- ※ 예컨대 공유숙박 이익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자동 징수

### 공동규제에 대한 비판과 법적 규제 시도

#### ■ 공동규제의 리스크와 한계 논의

- 공동규제의 절차에는 대형 플랫폼이 소형 플랫폼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경쟁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Finck, 2018)

※ 실질적인 협력과 대화의 보장이라는 추가 안전장치 필요

- 공적 주체의 통상적인 감독 절차는 여전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의 현상을 경계하는 한편, 모든 관계인들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Finck, 2018)
- 규제 당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업적 절차를 폐기하고 하향식 입법절차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고, 정기적 점검절차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부담

####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입법

- 더 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지향함과 동시에 유럽 역내외의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에 대해 유럽의 가치, 특히, 유럽 시민의 기본권과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른바 “The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입법
- 유럽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한 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
- 중개자로서의 온라인 플랫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플랫폼 내 행위들에 대한 자율규제/공동규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도리어 DSA/DMA의 규율 체계 내에서도 플랫폼 내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공동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평가와 시사점

- 유럽에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는 공적 주체(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의 공고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이 규율 집행을 대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같은 방식의 공동규제가 적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계인의 조정 가능성이 존재해야
-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행위자들의 “맥락의 준수”가 필요
-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가능성
- 자율규제 체계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틀 존재
- 적극적이고 민감한 시장의 반응이 필요

##### ■ 종적으로는 규제의 플랫폼화 모색

- “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각 세부 영역의 특성과 발전 속도를 고려해야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 전반의 방향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된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함
- 따라서 말 그대로 “Framework”(규범의 틀)를 제시하는 원칙들을 마치 플랫폼처럼 두고, 개별 영역에서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 수범자의 구성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원칙들을 영역별 참여자들의 자율을 가미하여,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음
- 규제의 플랫폼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의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음

### ■ **횡적으로는 관계인 모두의 참여를 제도화한 거버넌스 모색**

-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 자체에도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
  - 특히 ICT 영역의 규제 구성을 할 때, 첫째,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규제입안자보다 기술개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더 높다는 점, 둘째, 기술의 서비스 시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비스제공자, 기술개발자, 이용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
- **이러한 참여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버넌스 자체에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함**
  - 이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를 실체화/제도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으로서의 규제 체계의 하부에 관계인이 참여하여 구체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더하여 규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역할도 이러한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종적인 면과 횡적인 면의 논의는 Principle 중심의 규제 혹은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와도 비슷하고, “보장감독”과도 일맥상통**
- **단지 총론적인 규제 논의가 아니라 개별 전문 영역별로 구체적인 규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음**

- **메타버스 산업 분야의 대다수 BM은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적절할 것임**
  - 기술 집약적 산업 / 콘텐츠 위주의 산업 / 향후 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한 산업 / 시장의 민감도가 큰 산업
- **“자율 준수” 차원의 규범적 접근보다는 산업 발전과 리스크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를 모색하는 일이 필요**
  - 자율규제규약 제17조 이하의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쟁점법 실천 구조 모색
  -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포괄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구체적 쟁점별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예컨대 콘텐츠 관리를 위한 모델, 이용자 보호(규약 제7조)를 위한 모델 및 분쟁해결(규약 제8조)을 위한 구조 마련
- **과제 : 자율규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호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사회적(이용자-제공자 간) 합의 필요성 /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한 기준 정립 / 자율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 등**